

Q 노인수발보험이란?

나이가 많거나(고령), 노인성 질병(치매, 중풍)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, 간병과 수발, 시설입소 등 다양한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. 이 노인수발보험은 노인 질환자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,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아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Q 언제부터 실시되나요?

오는 2008년 7월부터 1단계로 실시하며 1~2등급 중증어르신 85,000명께 먼저 적용되며 2010년 7월부터 3등급 중증어르신을 포함해 166,000명 대상자에게 적용·실시 됩니다.

Q 본인부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?

수발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, 이용자 본인 부담액은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용의 20%수준입니다. 하지만 월 한도액 초과비용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%본인부담이 됩니다.

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,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.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수발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Q 수발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

수발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. 재가수발급여와 시설수발급여,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.

종 류	내 용
재가수발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33%;">• 가정수발 <li style="width: 33%;">• 목욕수발 <li style="width: 33%;">• 간호수발 <li style="width: 33%;">• 주·야간 보호수발 <li style="width: 33%;">• 단기보호수발
시설수발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 입소 수발
특별현금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33%;">• 가족수발비 <li style="width: 33%;">• 특례수발비 <li style="width: 33%;">• 요양병원수발비

Q 노인수발 보험제도 신청 및 지급절차

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·군·구에 신청합니다.

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하여 44개 항목을 직접 조사한 뒤 수발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심사 통과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.

가정간호사제도 알면 이용하기 쉬워요

Q 가정간호가 무엇인가요?

가정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집을 방문하여 가정에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간호라 합니다.



Q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가정간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투약, 산소 등 호흡기 지원, 기관지 절개간호, 상처치료, 욕창치료
신장투석 요법, 당뇨환자 혈당검사
혈액, 소변, 가래 등 간단한 검사물 채취 및 검사의뢰

Q 본인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인가요?

	방문료+교통비	처치료	총부담액
일반환자	10,734원	보험수가의 20%	10,734원 + 처치료
암 환자	8,652원	보험수가의 10%	8,652원 + 처치료

Q 어떤 질병 일 때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?

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, 만성질환자, 산모 및 신생아, 소변줄 환자,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, 뇌혈관질환자, 관급식 환자, 외상환자 등 거의 모든 질병이 가정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 어디에 신청 하나요?

구별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3차병원 및 일부 2차병원에서 합니다.

